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48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정을호·조정식·박용갑

전진숙 • 백혜련 • 이훈기

서미화 • 박정현 • 안태준

홍기원 · 강준현 · 정준호

이정문 · 이해식 · 김문수

문정복 · 김태년 · 노종면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병세가 급속히 진행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 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교원 중 질환이 재발하여 급속히 진행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요청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휴직) ① (생 략)	제44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
	<u>상</u> ,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이 있거나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교원 중 질환이
	재발하여 급속히 진행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의
	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1
	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
	을 요청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 대체 인력
	을 채용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